

의안처리상황표	
의안번호	13
건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성북구청장
발의연월일	2026년 8월 12일
심사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의결결과	2026년 9월 7일 제32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
이송연월일	2026년 9월 8일
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	년 월 일 조례 제 호
<요지> 기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기후위기 시대의 정책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책임성과 이행력 제고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개정('26.1.1.시행)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성 북 구
(환경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의 안 번 호	13
------------	----

제출년월 : 2026년 8월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기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기후위기 시대의 정책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정책의 책임성과 이행력 제고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개정('26.1.1.시행)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성북구 2050 탄소중립 위원회를 성북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 변경(제10조제4항, 제12조)
- 나. 탄소중립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대한 구의회의 시정 및 개선 권고 규정 신설(제11조)
- 다. 변경된 법령명 및 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제16조, 제26조)
- 라.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의사항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26.6.25. ~ 2026.7.15.

- 결과 : 별도 의견 없음

2)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3)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4) 비용추계 등 자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인권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6)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7) 성별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8) 아동영향평가 결과 : 대상아님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6호 중 “그밖”을 “그 밖”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2050 탄소중립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본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의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의 제목 “(성북구 2050 탄소중립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성북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제16조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7조 중 “법 제26조 제1항”을 “법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 중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제6호”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제6호”로 한다.

제26조제6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략) 6. <u>그밖에</u>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생략) ④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1항에 따른 성북구 <u>2050 탄소중립위원회</u> (이하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10조(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5. (현행과 같음) 6. <u>그 밖</u> -----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기후위기대응위원회</u> ----- -----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대한 점검 결과를 <u>기본 계획</u> 과 구의 정책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11조(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① (현행과 같음) ② ----- ---- <u>기본계획</u> ----- -----. ③ <u>구의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u>

제12조(성북구 2050 탄소중립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추진하고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성북구 2050 탄소중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략)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 3. (생략)

③·④ (생략)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7조(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지원) 구청장은 구에 위치한 공공기관 등이 법 제26조 제1항

제12조(성북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

----- 기후위기대응위원회-----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

1. ~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준용) -----

-----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지원) -----
----- 법 제26조제1항 --

및 제2항에 따라 설정한 해당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구청장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u>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u>」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 ⑤ (생략) ⑥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u>환경부</u>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운영지침」을 따른다.	----- ----- -----. 제20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 ----- 「<u>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u>」 제2조제3호·제4호·제6호----- ----- ----- ----- -----. 제26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u>기후에너지</u> <u>지환경부</u> ----- -----.
---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개정안은, 기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기후위기 시대의 정책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정책의 책임성과 이행력 제고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26.1.1.시행)하여, 이에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새로운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님.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으로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이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되어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새로운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님.

4. 작성자

- 안전생활국 환경과장 우경죽